

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82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27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2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기하기 위함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액 : 16,105천원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
- 기금의 용도
 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 -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-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-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,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관리·운용하도록

되어 있고, 지방자치법 제35조,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,

- 200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,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 교부금으로 16,10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친절모범업소 환경개선,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,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등에 사용코자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
- 본 계획안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 되었는지와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은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은가?
- 답 : 국내 모범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짜임새 있는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,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.
- 문 : 금년에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으로 단속 실적이 있느냐?
- 답 : 2003년도에 무허가 업소 6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음.
- 문 : 올해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실적과 홍보는 잘하고 있는가?
- 답 : 2003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 실적은 1건으로 30,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, 보상금은 1건당 30,000원~300,000원 차등 지급하고 있음. 향후 부정불량식품 신고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2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